[사 건 명] 행심 2016-30

학교폭력에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7.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이유]

Ⅰ. 사건개요

가. 2016. 7. 18. 08시경 등굣길에 청구외 3학년 ◇◇◇가 같은 반 ◕◕◕에게 돌을 차며 "돈 안들이고 지옥으로 보내줄게"라고 말하고 교실에 돌을 가져와 위협하였고, 같은 날 교실에서 ◇◇◇ 옆에 있던 청구인이 "빨리 보내지 뭐해"라고 말하였으며, 2016. 7. 19. ◕◕◕의 부모가 117에 신고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함) 소집을 요구하였고, 2016. 7. 21. 8:40분경 교실에서 청구인이 친구들과 "◕◕◕네 엄마가 우리 신고했으니까 우리도 신고하자"라고 말하였다.

나. 2016. 7. 26. 학폭위에서 청구인은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고 함)을 받고, 이의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는 위원장 직권으로 인용하여 결정하여 2016. 9. 9. 통보하였으며, 위 집행정지인용결정에 대해서는 2016. 10. 17. 개최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로 추인되었다.

Ⅱ.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청구인은 2016. 7. 18. 등굣길에 ◇◇◇와 ◕◕◕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빨리 보내지 뭐해”, “없애버려”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고 간접적인 폭력행위도 없었고 ◕◕◕ 측의 신고 내용은 계속 번복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CCTV 확인이나 증인 확보와 같은 증거조사 없이 피해학생의 불명확한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폭위에서 ◕◕◕의 모(母)가 진술한 것을 볼 때 부분적인 인정이 필요하며, 청구인은 등굣길이 아닌 교실에서 “없애버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의 모가 학교폭력신고 접수 이후 ◕◕◕이 인형들을 앉혀놓고 서로 난폭하게 싸움을 붙이며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하고 본 건 이후로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하며 심리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미루어보아 정신적인 피해가 수반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의 모가 117 신고시에는 등굣길에 총 3명의 학생이 괴롭혔다고 했고, 학교폭력 신고시에는 2명을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며, 학폭위에서는 ◕◕◕과 그 모가 함께 참석하여 등굣길에 ◇◇◇가 괴롭혔고, 교실에서는 ◇◇◇와 청구인이 괴롭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학폭위에서 ◕◕◕의 모가 경미하지만 지속적으로 ◕◕◕에게 언어 폭력을 사용한 청구인에 대한 부분이 적혀 있는 ◕◕◕의 일기장을 읽었는데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22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제18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제출된 증거 포함), 청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외 ◇◇◇가 2016. 7. 18. 08시경 등굣길에서 ◇◇◇가 ◕◕◕에게 돌멩이를 던지며 '돈 안들이고 지옥으로 보내줄게'라고 말하고 청구인은 옆에서 '없애버려'라고 말했다는 것에 대해 ◕◕◕의 모친은 117 신고에 접수하였으며, 학교폭력으로 신고 후 위 청구외 ◇◇◇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신이 등굣길에 ◕◕◕에게 돌멩이를 던지며 위와 같이 말한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하였다.

2) ◕◕◕의 모는 학폭위에 출석하여 과거 ◕◕◕이 작성한 일기장의 내용 중 일부를 노트에 다시 정리를 하여 이를 학폭위 개최 당시 학폭위 위원들에게 공개하였다.

3) 청구인은 위 학폭위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2016. 7. 21. 오전에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친구가 먼저 "◕◕◕네 엄마가 신고했으니까 우리도 신고하자"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동조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이유는 ◕◕◕이 폭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동조한 것이라고 학폭위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였고, 학폭위 개최 결과 위 ◇◇◇와 청구인은 각 서면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그러나 먼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인이 행했다는 폭력행위가 무엇인지 그 특정자체가 불분명하다.

1) 학폭위가 개최되어 법에 정해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해학생, 피해학생, 가해행위(폭력행위) 자체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여기서 의미하는 가해행위라 함은 그 가해행위의 주체, 장소, 일시, 대

상 등이 특정되어 처분을 받아야 하는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대해, 어떠한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그로 인해 어떠한 처분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학폭위를 개최하는 측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특정을 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누구도 학폭위의 결과에 수긍할 수 없게 될 것이고, 학폭위 제도를 법률로서 마련한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을 돌이켜보건데, 우선 학폭위에서 상정안건으로 된 사안개요를 보면 **'2016년 7월 18일 08:05경 등굣길에서 ◇◇◇가 ◕◕◕에게 돌멩이를 던지며 '돈 안들이고 지옥으로 보내줄게'라고 말하고 청구인은 옆에서 '없애버려'라고 말함'**(이하 이를 **'학폭위 상정안건'**라고 함) 되어 있으며, 이러한 학폭위 상정안건은 ◕◕◕, ◇◇◇, 청구인 등의 당사자가 학폭위에 참석하여 진술을 하기 전에 피청구인 측에서 동일하게 안내해 주었음이 학폭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반면에 학폭위 개최 결과 청구인에 대한 처분결과통지서상의 조치원인을 보면, ① **2016. 7. 18. 08시경 등굣길에서 ◇◇◇이 ◕◕◕에게 돌을 차며 "돈 안들이고 지옥으로 보내줄게"라고 말하고, 교실에서 돌을 가져와 위협함**(이하 이를 '**제1조치원인**'이라고 함), ② **이때 교실에서 청구인은 ◇◇◇ 옆에서 "빨리 보내지 뭐해"라고 말함**(이하 이를 **'제2조치원인**'이라고 함), ③ **2016. 7. 21. 08:40경 교실에서 청구인이 친구들과 "◕◕◕네 엄마가 우리 신고했으니까 우리도 신고하자"라고 말함**(이하 이를 '**제3조치원인**'이라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기본적으로 학폭위 상정안건에서 논의된 폭력행위의 대상과 학폭위 개최 후 처분결과통지서상의 조치원인의 내용 자체가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학폭위가 개최될 때

까지 청구인 측에서 알고 있던 행위대상과 달리 학폭위 개최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거하여 논의되고 주장된 행위대상을 임의로 추가, 변경하여 처분의 근거로 삼게 된다면 청구인 측에서는 불의의 타격일 뿐만 아니라 학폭위 제도의 근본 취지와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3) 뿐만 아니라 학폭위 상정안건은 등굣길에서 ◇◇◇가 돌멩이를 ◕◕◕에게 던지면서 "돈 안들이고 지옥으로 보내줄게"라고 말하고, 그 옆에서 있던 청구인이 "없애버려"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것인데, 최초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청구인의 모(母)가 CCTV라고 확인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자, 다시 ◕◕◕측에서도 등굣길이 아닌 교실 내에서 발언하여 동조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태도를 바꾸었으며(청구인 측에 따르면 당시 청구인은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하였으므로 등굣길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학교 CCTV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측에서 다시 진술태도를 바꾸어 등굣길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하므로 CCTV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함), 설령 청구인이 교실 내에서 "없어버려"라고 발언을 한 것이라며, 그 청구인의 발언을 교실에서 들은 다른 급우친구들이 있었는지 여부, 발언을 하였다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전혀 없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바(심지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본인 자술서나 진술서조차도 확인할 수 없으며, 학폭위에 참석한 ◇◇◇나 그 부친의 진술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은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이나 언어폭력을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학폭위에 참석한 위원들 역시 이 점에 대해 누구하나 명확하게 지적하여 확인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학폭위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측의 진술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며, ◕◕◕과 ◕◕◕의 부모의 진술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면, 최초에 피해신고 당시의 ◕◕◕의 진술서나 자술서도 확인할 수 없고 학폭위에 출석해서도 학폭위 상정안과 같이 피해본 사실이 있다는 진술 뿐 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보다는 오히려 ◕◕◕의 모친이 과거 ◕◕◕의 일기장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마치 청구인이나 ◇◇◇ 등 여러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점만을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진술을 하고 있고, 또한 최초 ◕◕◕ 모친의 신고 내용을 보면 3명의 가해학생을 지목하였다가 학폭위에서는 2명만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며, 등굣길에서 다른 친구들과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하면서 다른 목격자 친구들도 확인하여 진술을 확보하겠다고 이야기까지 하였지만 결국 청구인이 등굣길에서 ◕◕◕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CCTV까지 보자고 요청을 하자 그제 서야 진술태도를 바꾸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관련된 ◕◕◕측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처분결과통지서상의 제3조치원인의 경우 청구인이 교실에서 다른 친구들이 "◕◕◕네 엄마가 우리 신고했으니까 우리도 신고하자"라고 하여 청구인은 여기에 동조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인이 교실 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거나 동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언어폭력의 정도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3조치원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폭위 상

정안건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 것이었으므로 학폭위 개최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확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의 모가 학폭위에 출석하여 과거 ◕◕◕이 일기장에 기재한 내용을 간추려 노트에 옮겨 적어 와서 이를 공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지만, 피청구인 측에서 일기장에 기재된 내용만을 가지고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친구나 학생이 잘못을 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심히 위험한 발상일 것이며, 학폭위 상정안건과 전혀 무관한 과거 ◕◕◕이 적은 일기장의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아무런 사실관계조사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 및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한 파악도 하지 않고 단지 주관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의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방식으로 학폭위가 개최되고 처분이 행해진다면 이는 학폭위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으로서는 학폭위 상정안건의 사실을 특정하고 학폭위에 상정된 그 안건에 대해 그 유무를 확인하고 잘못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처분이 무엇인지 논의를 한 후에 피청구인이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폭위 상정안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혀 다른 과거 ◕◕◕의 일기장에 기재

된 내용을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학폭위 상정안건이나 처분결과통지서상의 처분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 사건 청구인이 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고, ◕◕◕측의 진술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행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